2017년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 일시 : 2017년 11월 4일 (토), 14:00~17:00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314B호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

[세부일정]

▸일시 : 2017년 11월 4일 (토), 14:00~17:00

▸장소 : 고려대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314B호

제1부 학술대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14:00-16: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이소영 (한중대)
14:10~14:40	주제발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의 질 :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박보영 (극동대) • 사회 : 엄재근 (I새공공협력원)
14:40~14:50	휴 식	
14:50~15:20	자유발표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같음', '차이', '차별' : 철학적 분석** • 발표 : 이주연 (국제사이버대) • 토론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 • 사회 : 엄재근 (I새공공협력원)
15:20~15:30	휴 식	
15:30~16: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종합토론 : 양윤모 (극동대) • 폐회선언 : 회장 이소영 (한중대)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10-17:00]

• 진행 : 송시형(연구윤리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목 차]

2017년 가을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 주제발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의 질 :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 7
▸발표 : 이소영 (한중대학교)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 자유발표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같음', '차이', '차별' : 철학적 분석 ····· 23
▸발표 : 이주연 (국제사이버대학교)
▸토론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 39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 40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44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주제발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의 질

: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 이소영(한중대학교)

[자유발표]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같음', '차이', '차별' : 철학적 분석

- 이주연(국제사이버대학교)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_ 발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질
: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이소영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머리말

행복과 안녕(well-being)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는 사회정책과 이론의 논의에서 항상 거론되어 왔던 주제였다. 또한 그 권리의 실현은 개인이 속한 사회라는 환경과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 역시 사회과학 분야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소수 집단의 권리보호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관한 연구와 연결된다. 사회의 질은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과 아울러 사회정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포용의 논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1] 따라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주류사회로부터의 각종의 배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완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의 문제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인간적이고 심각한 범죄의 실태는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사회의 질은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풍부한 자원과 안전,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응집력,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포용성, 개인의 역량강화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Hermann, 2005; Beck et al., 2001).

아동폭력과 성폭력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서, 성인장애인 보다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가, 장애남성보다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보가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과학적으로 엄격한 문헌은 더욱 드물고,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반복성, 장기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고 및 인지율이 낮고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장애인 범죄피해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인 이슈화를 출발점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상기시킨 후, 폭력 피해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논의하고 그 함의를 검토해봄으로서 장애인 범죄 피해의 예방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장애인 범죄피해 연구의 맥락

사회는 장애인들의 희생을 오랫동안 묵인하여 왔다. 고대에는 장애가 있는 영아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되었으며, 중세에는 수도원으로 보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학대 및 방임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과 사회로부터 격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Sobsey et al., 1995).

장애인들이 구체적인 범죄의 피해자로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의 폰 헨티그(Von Hentig, 1948)의 "범죄희생자에 대한 연구(1948)"에서 부터이다. 범죄피해자학의 초기 연구들은 가해자와 희생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폰 헨티그는 네 가지 범주의 사람들- 젊은이, 노인, 여성, 장애인- 이 범죄피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장애와 희생 사이의 관계를 최초로 명시화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장애와 범죄 피해 간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였지만, 아동학대 연구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대비율은 6,70년대부터 학자들이 주목해왔던 주제였다(Petersilia et al., 2001).

그 후 1994년 솝지(Sobsey, 1994)의 "장애인의 삶 속의 폭력과 학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솝지의 연구는 시설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성인장애인의 삶 속에 만연한 범죄와 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환기시켰으며, 많은 연구자들의 각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장애인 권리운동이 확산됨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 범죄피해자 옹호단체들이 조직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게 되었다.

1998년 미 의회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장애인범죄피해인식법〉(Crime Victims With Disabilities Awareness Act, 1998. P.L. 105-301)을 통과시켰다.[2] 이 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보의 출처가 되는 미 범죄피해조사국(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이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범죄피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부재가 지적되어 이 분야에서의 연구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시작된다(Petersilia et al., 2001).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는 1994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3] 그러나 장애인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범죄피해에 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로서 한국의 장애인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나 자료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다.[4]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 폭력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연구들도 출현하고 있으나(이현수 · 김다현, 2015; 오원석, 2010; 이정현, 2014; Lee, 2017), 전체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며, 학계의 관심도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다.

Ⅲ.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심각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폭력 및 학대의 비율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Wilson and Brewer, 1992). 장애인 대상의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범죄의 반복적 성격, 장기간의 범죄, 그리고 비가시성 등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신고 및 인지율이 낮고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범죄 피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의 심각

2) 이 법은 “발달 장애가 있는 범죄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발달 장애가 있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정의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동법 제 5 조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성격; 그리고 그 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인 특성들과 관련된 통계들을 범죄피해조사국의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14년 범죄피해조사에서 폭력범죄(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등)피해 및 재산범죄(절도, 사기, 손괴, 단순주거침입 등)피해를 합한 전체 범죄피해율은 인구 10만명당 3.742로 추정되었다(최수형 외, 2014: 90). 이 조사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 복지카드의 소지여부에 관한 문항뿐이었다.

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전국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관련 자료들이 입수가능하다.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라고 한다. 만성적이라는 것은 전 인생에 걸쳐서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는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등의 만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 기능상의 장애를 지칭하지만, 그 밖의 통상적인 발달이 일어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5)]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관리,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 등의 영역 가운에 3가지 이상의 기능에 명백한 제한이 나타나는 경우에 발달장애 진단이 내려진다(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1994). 개인차는 있지만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계획되고 조정된 포괄적인 서비스와 개별화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출현율은 2005년 4.59%에서 2014년 5.59%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2011년과 2014년의 결과를 비교할 때, 전체 장애인 수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수가 2011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 511, 051명으로 지적장애인은 195,283명, 자폐성장애인은 22,853명으로 조사되었다(고용개발원, 2016).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발달장애인 고유의 문제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1〉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출현율 변화 추이

구분	2005년	2011년	2014년
전체	4.59	5.61	5.59
지체장애	1.99	2.72	2.71
지적장애	0.12	0.28	0.36
자폐성장애	0.01	0.01	0.02

*자료 : 김성희 외(2014)에서 재구성.

2.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비가시성

미 범죄피해조사국(NCVS)에서는 매년 장애인 대상의 범죄통계를 발표한다.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의 조사 결과 장애인 폭력 피해율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2.5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Harrell, 2017:1).[6)]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통계가 수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피해 사례들만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폭행, 약취 등이 수년간 지속되었던 사건들만 보더라도 장애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은 유추 가능하다.[7)] 성폭력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접수 건수는 2015년 1,107건으로 2013년 이후 연간 1천 건을 넘어섰다.[8)]

뿐만 아니라 암수범죄 문제도 있다.[9)]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경찰 데이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범죄의 37%만이 경찰에 보고된다고 추정된 바와 같이(법무성 통계국, 2000),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율은 더 높다고 보아야한다.

6) 이 데이터는 미 인구조사국의 자료와 결합하여 산출되었으며, 장애는 청력, 시력, 인지, 이동, 자기 관리, 독립적 생활의 6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는가에 따라서 범주화되었다(Harrell, 2017).

7) 소위 '염전노예사건(2014.02.06, 조선일보)과 축사노예(2016.07.16., 연합뉴스)'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무임금 강제노역 및 착취학대사건은 언론에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사기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청각언어장애인 28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기범죄도 있었으며(2017.02.10, KBS 9시뉴스), 발달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장애인도 많았다(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

8) 2015년 전국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피해자수는 1,625명이었으며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전체 성폭력 피해 장애인 중 78%를 차지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6).

9) 암수범죄(暗數犯罪)는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 미파악 등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이다. 주로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마약범죄와 같이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에 많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가 그 위험성에 비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범죄 신고 및 인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비가시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첫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의 한계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인지능력과 소통능력의 제한이 있어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반복적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피해 인지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신고율이 낮다. 발달장애인은 모든 사람들이 친구라고 믿는 등 사회적 단서를 잘못 이해하고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여도 이를 보고하는 어휘가 부족할 수 있어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상상이나 오해로 간주되어 피해자로서의 사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인지하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 등의 명목으로 탄원서를 제출 혹은 고소 취하를 종용받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서울신문, 2015.09.14).

둘째, 돌봄의 필요성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일에 익숙하며, 돌봄의 형태는 매우 친밀한 방식(신체접촉을 포함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대인관계형 폭력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는데, 이 경우 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 또는 보다 제한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 있다. 사람이 의식주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은 학대에의 저항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관과 피해자 간의, 또는 가족과 피해자 당사자 간의 이해의 상충은 장애인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재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재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형사 사법 제도의 이용방법을 모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당국에 보고 될 때, 고의적인 범죄보다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범죄를 축소 또는 은폐시킬 수 있는 관행들이다(Sobsey, 1994).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장애인은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세계일보, 2014.08.20).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부재한 경우 보복범죄의 두려움과 노출의 위험성이 커서 범죄신고율은 낮아지며 범죄는 비가시화된다.

IV. 범죄피해의 요인들

장애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적 조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솝지와 칼더의 다중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촉진시키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보려 한다.

솝지와 칼더(Sobsey and Calder, 1999)는 잠재적 희생자, 잠재적 범법자, 그리고 잠재적 희생자와 범법자 간의 상호작용 및 이러한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관계의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사회통제의 주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사회 내의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문화를 다층적으로 고찰하는 다중요인(multifactorial) 모델이다. 또한 각각의 요인들은 하위의 요인들로 세분화된다. 본문에서는 피해자 관련 요인, 가해자 관련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것이다(Sobsey and Calder, 1999: 9-22).

1. 피해자 관련 요인

피해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등이 포함된다.

1) 장애의 직접효과

장애는 장애인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상황에서 탈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애의 특징, 즉 장애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은 피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중증의 장애는 케어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며, 또 어떤 장애는 중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의 손상을 가져온다. 특히 발달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순응해야 할 시점과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범죄자에게 너무 쉽게 순종하거나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2) 장애의 사회적 매개효과

장애로 인한 능력손상은 사회적 반응으로 인하여 확대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주장과

선택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순종과 순응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장애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솝지와 칼더(Sobsey and Calder, 1999: 13)는 i)장애인들이 인권과 시민권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ii)가족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돌봄 제공자에게 동일하게 반응하도록 주입받고 있다는 점 iii) 수동적인 의사소통 전략은 있지만 상황을 제어하는 기술은 거의 습득하지 못하는 점 iv)신체적 자극을 통한 반복적 학습으로 인하여 연령에 맞는 적절한 사적 공간 감각의 개발이 저해받는 점 등이 장애인의 피해자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3) 피해의 촉진 및 유인

피해를 촉진하는 행동이란 가해자 측의 폭력을 끌어오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인지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폭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적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촉진행동으로 인하여 폭력의 행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발달장애인이 그를 강도로 오인하여 체포하려는 경찰관과 소통을 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다(Petesilia, 2001). 물론 촉진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폭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회적 관행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개입이나 구속 수위가 높아져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해의 유인은 보다 강하게 가해자의 동기 부여로 발전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취약성의 인식이 희생자 선택의 커다란 요인이기는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가해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건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범죄의 동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 대한 통제, 성, 금품, 착취에 대한 대안부재 등은 범죄를 동기화시키는 일반적인 요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피해자 관련 요인이나 피해자의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은 가해자들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의 탐구와 이해를 통하여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가해자 관련 요인

1) 인식된 취약성

가해자가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장애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식된 취약

성(perceived vulnerability)이란 잠재적인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한 잠재적인 가해자의 추정치이다. 이 추정치는 실제의 취약성에 근거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에 근거할 수도 있다. 장애인들이 "용이한 먹이감" 으로 간주되는 한, 희생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취약성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통념들은 가해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장애인을 무기력하게 묘사하는 방식은 취약성의 추정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장애인의 취약성과 무기력성에 주목을 하게 만드는 사회는 한편으로 이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2) 가해자의 유형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생활 반경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케어제공자에게 의존하는 바 이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면 피해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케어제공자의 범죄 가운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약탈형 범죄와 부패형 범죄이다(Sobsey, 1994; Sobsey et al., 1995).

약탈형(predatory) 범죄자는 전형적으로 계획 및 조직의 요소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으면 충동적인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극단적인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일수도 있고 단순한 괴롭힘과 비난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 중 많은 사람들의 프로파일은 부적절한 감정에 대한 압도, 타인에 대한 통제력의 결핍, 취약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의 욕구 등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구속, 고문, 성폭행 등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다.

부패형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해약을 끼치려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유형이다. 어떤 경우에 이들은 무난하고 심지어 훌륭하기까지 한 케어제공자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적절한 훈련과 감독 혹은 명확한 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의 형태가 악용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 많은 케어제공자들이 케어활동 중 부적절한 감정을 경험하는 시점에 도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서는 위반행동을 저지른다. 부패형의 범죄자들은 대부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부패하지만, 때로는 급격하게 타락하기도 한다.

3. 환경적 요인

환경에는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이 모두 포함된다. 미시적 환경은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래 연령의 비장애인보다 케어제공자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상호작용은 권력불평등을 가져오기 쉽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수반하는 상황은 사람들과의—심지어 가족구성원들과도— 굳건한 애착과 연결을 위협한다.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 및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족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기 쉬워 학대와 폭력의 완충기제로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기관 직원의 이직 등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장애인이 여러 명의 담당자에게 노출됨으로써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통하여 목적지로 이동을 한다. 혼자서 이동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길에서 만날 수 있고, 운송차량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가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비장애인에게는 해가 없는 일상적인 환경이 장애인에게는 위험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

4. 다중모델의 함의

전술한 여러 요인들의 범죄피해 관련 정도와 구체적인 작용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범죄피해가 가해자, 피해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모델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다중모델이 갖는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의 중요한 요인들은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그리고 인식된 취약성 등이었다. 장애의(혹은 장애가 수반하는) 특성들이 피해자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이러한 특성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매개효과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요인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장애로 인한 능력손상은 사회적 반응으로 인하여 확대될 수 있다. 즉, 인식된 취약성의 요소는 장애를 취약과 연결시키는 사회의 반응과 밀접히 연결된다. 장애인에게 적대적인 환경은 그 자체가 폭력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올베우스(Olweus, 1993)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논의하면서, 가해자는 가장 자신을 덜 방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선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취약성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적인 요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폭력의 메카니즘이다(Flynt and Morton, 2004).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이 피해를 유인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 피해자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이 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논의이다. 범죄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상기시킨 후, 폭력피해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논의하고 그 함의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범죄피해에 관련된 위험요소들의 탐구와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10)]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희소한 분야로 남아있다. 장애인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마저도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인지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은 자기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장애인 범죄 피해의 가시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국가 간 범죄유형을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학교폭력 등 권력관계를 기초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윤상연, 2017: 170).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지원하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의식되지 못했던 범죄의 사회적 매개효과를 단절시키고 교정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의 장애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10) 제도적인 차원의 대처방안인 각종의 조처들(처벌강화 등) 역시 폭력발생의 억제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김성희 외.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수탁 정책보고서 2014-73.

박미랑, 박지선, 최정호. 2015.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3), 179-195.

오봉욱 · 전동일. 2017.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고찰", **장애인복지연구**, 8(1), 73-95.

오원석. 2010.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167-189.

윤상연. 2017. "한국의 범죄현상 : 범죄통계를 통한 국가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8).

이상열. 2016.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6, 141-169.

이정현. 2014.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제", 제15회 **장애인식개선세미나**,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장애인먼저실천본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이현수 · 김다현. 2015. "특수아동의 학교폭력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 · 인권 교육의 방향", **위기관리논집,** 8(4), 143-156.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한눈에 보는 2016 장애인통계**.

최수형 외.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eck, W., L. J. G. Maesen v.d., F. Thomese, and A. Walker (eds.).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Kluwer International.

The Crime Victims with Disabilities Awareness Act, 1998 (P.L. 105-301).

Flynt, S and Morton, R. C. 2004. "Bullying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1, 330-333.

Harrell, E.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July 2017. NCJ 250632.

Herrmann, P. 2005. "Social Quality- opening individual well-being for a Social Perspective", *Alternatives: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4).

Lee, So-Young. 2017. "Exploring Strategies to Reduce Violence in Schools Against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5(2), 21-39.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Petersilia, J., Foote, J. and Crowell, N. 2001. *Crime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port of a workshop*. Washington, DC: National Research Council.

Petersilia, J. 2001. "Crime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Review Essay", *Crimianl Justice and Behavior,* 28(6), 655-694.

Sobsey, D. 1994. *Violence and Abuse in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nd of silent acceptance?* Baltimore: Brooks.

Sobsey, D. and Calder, P. 1999.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nceptual analysis.* commissioned by the U.S. National Research Council's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for a Workshop on Victims with Disabilities resented in Irvine, CA in October, 1999.

Sobsey, D., Lucardie, R. and Mansell, S. 1995. *Violence and Disability: An Annotated Bibliography*. Baltimore: Brooks.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Amendments of 1994. Public Law 103-230 {42 USC 6001}).

Von Hentig, H. 1948. *The Criminal and His Victi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Walker, A. 2009. "The Social Quality Approach: Bridging Asia and Europ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09-235.

Wilson, C. and Brewer, N. 1992. "The Incidence of Criminal Victimization of Individual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ustralian Psychologist*, 27, 114-117.

[토론문]

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이론화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이 논문은 보기 드물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학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이 논문은 장애인 대상 범죄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이해를 명확히 표출 또는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토론자는 연구대상의 선정 등 연구기획의 측면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 논문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 기반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관련연구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료연구자들이나 실무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이 논문의 진짜 미덕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바로 '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이론화(theorizing)' 입니다. 예컨대 이 논문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장애인 범죄피해 연구의 맥락' 을 제시한 후 '범죄피해의 비가시성' 이라는 워딩(wording)을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성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모델에 기초하여 범죄 피해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이론화 작업이 미미하여 관련연구의 발전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향후 관련연구의 확대 및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여타 연구들이 그렇듯 이 논문 역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논문제목에 나타난 '사회의 질' (또는 사회적 질; social quality)이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문제목은 대부분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논문이 '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와 사회적 질 접근을 접목시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즉 사회적 질의 맥락에서 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사회적 질의 맥락에서 어떤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논문의 주요 내용들은 다소 그런 기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이론화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나 결론에서 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와 사회적 질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독자들의 애초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논의 수준이나 분량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논문수정 시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목차구성이나 내용기술에 있어서 이 점을 십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목차 등을 수정하여 사회적 질이라는 키워드를 살림으로써 논문제목과 내용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목차에 사회적 질과 관련된 워딩(wording)들을 충분히 녹여낼 것을 권합니다.

지금 언급한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이 논문은 향후 관련 분야의 정초연구로서 인식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1부 학술대회 **자유발표_ 발표**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같음', '차이', '차별' : 철학적 분석

이주연
(국제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Ⅰ. 서 론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철학의 관점에 입각해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조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담" 을 의미한다(김예숙, 1999). 여성주의 상담의 가치관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어떤 여성/소수자에게 폭력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다. 이는 급진적 여성주의 구호를 받아들인 것으로 개인은 사회적·정치적 맥락과의 고유한 상호작용 경험을 내면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Worell and Remer, 2004).

사회적·정치적 위치가 제공하는 사회적 문화는 내담자가 구성하는 개인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처한 외적 조건이 내담자가 받게 되는 자극을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개인은 주어진 자극에 선택적 반응 및 모방으로 자신의 인성이 발달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사회적·정치적 위치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발달 단계 탐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 드러내고 있는 개인적인 것 중에서 과거의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조건화/내면화시킨 것을 찾아내어, 외적조건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순수한 내적인 것을 가능한한 분리하고, 상담 장면에서 그 순수한 내적인 것을 강화해 주체적으로 현재의 외적 조건을 변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찾는다(노성숙, 2009).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어떤 여성/소수자에게 폭력이 된다면 그 여성/소수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그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돕는다.

이 과정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당연시되지만 여성/소수자인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변화시켜야 할 조건임을 공감하며 내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능력, 연령, 인종, 계층, 성 차별 등은 우리 사회의 외적 조건으로 여성주의 상담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는 조건이므로 존재의 정당성이 부정당한 사람들의 존재 정당성을 재조명해주고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차이' 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차이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이해와 설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우월과 열등의 기반위에 억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음' , '차이' , '차별' 의 개념들과 얽힌 문제들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다뤄져야할 중요한 문제를 구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성 철인왕' 가능성을 타진한 플라톤의 여성주의적 시각과 차별의 이유를 광고문구와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광고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며 '여성도 철인 왕이 될 수 있다' 고 한 플라톤의 여성관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차별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성은 어떠한 조건에서만 철인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문장내에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장면에서 이 둘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의미를 가진다. 여성주의 상담이 여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와의 연관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화가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통한 비판적 논의는 여성의 차이를 차별로 이르게 하는 고리를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전통적 상담과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상담은 사회의 성차별문제를 자각하고 여성차별의 철폐와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상담으로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본다. 여성주의 상담은 단순한 상담이론이나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평가절하 되었던 여성을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된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다(김혜경, 2005: 14). 전통적인 상담이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철저히 가부장적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자기문제의 내외적 원인을 분리해서 보도록 한다. 나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 변화를 추구한다. 여성을 남성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들을 재

평가를 통해서 여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성숙, 2009).

전통적 상담은 여성과 남성이 정형화된 성역할의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해야한다고 믿는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것으로 보며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근거한 성역할 구분과 사회구조는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상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특징에 대하여 차별적인 진단을 내려왔고, 내담자의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내담자의 내적요인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간주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 상담은 이와는 다른 시각을 갖는다.

여성주의 상담의 핵심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이성의 소유자인데 남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 상담과정은 사회화가 어떻게 내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각하게 하며 내면화된 성역할에 도전하도록 촉진시킨다(김혜경, 2005: 24). 즉,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에서 중요한 가치이며 전통적 상담과 구분되는 특성이며 여성억압의 근원이 가부장제의 성/성별체계에 뿌리박고 있다는 시각으로 성별의 억압적 성질들을 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Ⅲ.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공익광고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까요?
여자라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세상 절반의 짐을 나누어집니다."

1988년에 '세상의 절반' 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전파를 탔던 공익방송 문구다. 당연히 여자라서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 누가 기회를 주는 건가? 그동안 누가 여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걸까? 여성의 노동기회 박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군가가 주는 기회의 평등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유리천장이 가로막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다. 여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동 기회가 동등하게 있다면, 그 노동의 대가가 동등하게 평가된다면, 노동의 책임도 당연히 동등하게 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다. 여성

에게만 부과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절반의 짐을 남성도 함께 나누어 져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육아와 교육비의 부담 등등의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풍토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국가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1990년대 초까지 가족계획 공익광고는 대대적이었으며 실행에 있어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산부인과 등지에서 산아제한은 초인권적으로 이루어졌다. 표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부터 시작해 '하나만 낳아도 지구는 초만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등 위협적인 문구가 난무하였다. 부부가 결정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한 이유는 가족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여러 사회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해 왔고, 사적 소유의 기본 틀이 되어 왔으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은 물론 노인봉양과 노동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왔다. 즉, 가족은 국가 유지의 책임과 의무를 고스란히 짊어진 최소 단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출산율 저하는 물론 독신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는 그간 가족의 의무였던 영역이 사회의 의무로 전이되는 현상을 낳았다. 가족이 축소되고 해체됨으로써 가족이 그간 담당해왔던 복지기능은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그럼으로써 자녀양육, 노인부양, 보건, 교육 문제 등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의 약화는 국가의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대부터 국가의 역할을 크게 부각한 사람이 플라톤이다.

Ⅳ.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플라톤의 여성관

1. 국가의 역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한 가족, 공동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주어지며 그 문화 맥락 안에서 그의 존재가 이해되며 도덕성도 소속된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길러진다.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말과 행위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과 함께 시도되고 시작된다. 개인의 정체성도 공동체 내의 타인과의 연관성 속에서 획득된다. 게다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존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기보다는 자유를 획득하려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자유획득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플라톤은 국가라고 보았다.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이다. 플라톤은 국가가 진정한 국가라면 구성원의 행

복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에 있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야 비로소 국가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인간은 영혼과 신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혼이 보다 근원적이라고 보았다(이상인, 1999). 그가 생각한 진정한 지식은 합리적 영혼이나 정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에 비해 신체는 감각이라는 불완전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신체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혼이 가변적이고, 잘 속으며, 유한한 신체를 다독이고 살아야 하는 숙명을 짊어진다. 국가는 이런 신체를 가진 국가 구성원들을 잘 교육시켜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임무다. 바꿔 말하면 개인차가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최대 덕이다. 국가와 구성원 개인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은 노예와 같은 계급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의 영혼을 최선으로 만들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따른다.

2. '여성 철인 왕' 을 둘러싼 쟁점

플라톤은 『국가』 제5권에서 여성도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철인 왕' 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도 철인 왕이 될 수 있다는 말' 은 여자가 당시 그리스시대 남자들처럼 벌거벗은 채 체육을 단련[1]한다거나 전쟁에서도, 교육에서도 똑같은 훈련[2]을 받아 영혼이 훌륭하게 신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가 남자처럼 되었을 때라야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플라톤이 말한 여성도 철인 왕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여자도 철인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여자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남자는 당연하게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왜 남자는 당연한가? 남자는 당연하지만 여자는 어느 경우에 조건적으로 철인왕이 될 수 있는가?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진리' 라고 하는데 진리에 대한 탐구, 사물 자체(eidos, Idee)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형이상학이다. 불변하며 보편적인 사물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영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이성은 사리

1) 스파르타 여성들은 소녀들도 달리기, 레슬링 원반던지기, 창던지기로 신체를 단련했다.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하거나 어떤 축제에선 젊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2)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모두가 가능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나라의 것이다." (법률 804d-806c)

판단을 정확히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각의 세계인 신체를 잘 절제하도록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성은 감각과 같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과는 반대인, 대립되는 세계다. 이성과 감각의 세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출발한다. 즉 영혼과 육체, 이데아와 형상의 세계를 나누어 가치를 영혼과 이데아에 둔다. 이성은 영혼의 세계이고 감각은 육체의 세계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곧 남성은 영혼의 세계에, 여성은 육체의 세계에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연결 짓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 있다고 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種인 한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의 구조는 같은데 남성이 영혼에 해당되고 여성은 육체에 해당된다는 논리는 근거와 추론에 기초하여 이끌어낸 결론 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소망에 의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는 인간 존재의 위계상 최고인 남성에게 이성이 부여된 것이고 이는 통념상 아무런 저항 없이 〈이성적 인간=남성〉이라는 도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그 차이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의 차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서 이성- 남성, 감각-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고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3] 다시 말해 이들이 살았던 아테네 사회의 관습과 편견에 의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심리적)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심리적 경향성이 잘못된 도식(이성- 남성, 감각-여성)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선량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남자는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를 닮아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대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 뜻을 거역하려 하는 여자, 고통을 겪고 있거나 슬픔에 잠긴 여자, 울고 있는 여자, 또 병을 앓거나 사랑에 빠진 여자,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자, 이런 여자들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 [4]는 것으로 보아 플라톤은 여성의 특징을 불안정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덕쟁이이며 사랑에 이성을 잃는 존재로 규정한다. 앞서 기술된 여성이 가지는 양태는 여성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규정, 남성과 여성을 둘로 나누어 대립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에 의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언어 혹은 사용 언어에 좋고 싫음 또는 가치평가와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용어는 심리학적으로 이미 감정과 태도가 정해진 다음에 나온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이 다른 것이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기능이 다른 것이지 서로 맞서거나 반대의미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립되는 개념이

3) "Traditional efforts to justify what we now view as racist and sexist institutions have portrayed woman and people of colour as 'different', and often explicitly 'inferior', by nature." (Haslanger, 2000: 116)

4) Republic, 395 d-e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 모습을 상정해 놓고 삶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남성적, 여성적이라 구분하여 정반대일 정도로 차이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과정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사고가 고정되고 왜곡되는 인지적 오류를 유발하기 쉽다. 여성이 감정적이고 부드러우며 모성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이성적이고 강건하며 진취적이기도 한 인간이다. 남성도 이성적이고 강하지만 격정적이고, 무모하며 섬세하기도 한 인간이다. 인간의 다종다양한 면은 대립적이거나 반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일 뿐이다. 자연 상태인 남자와 여자를 대립적으로 규정해 놓고 어느 한 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 사회문화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녀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성질(性)을 다 사상한 후에 마치 사회적 가치가 중립적으로 부여된 상태로 보이게 한 다음 남녀를 구분하여 대립적으로 보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평가된 성질로 생물학적 성질과 자연적인 성질을 대체해버리는 일은 폭력에 가깝다. 우리 삶은 양자의 대립으로만 나누어 선택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다. 서두에 인용된 광고 문구에서도 '남자만 할 수 있는 일' 과 '여자라서 못하는 일' 은 의미상 동의어다.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남자만 할 수 있는 일과 여자라서 못하는 일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정해 놓고 여자를 배제한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의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박탈한 사람은 사회문화적 구조 안에서 파악되어야만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대립구도를 만들어 사회에 제공한 사람(계층)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셋째, 여자도 철인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의 평등은 내용상 여성이 자기 성을 버릴 때 평등하게 대한다는 의미이다.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無化시켜 여자가 남자와 같아지게 만드는 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다(왕소정, 2008). 국가 방위에 필요한 각종 훈련이나 교육은 특별히 남성적 특질로 인식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는데 남·여 공히 동등한 교육을 운운하면서도 여성적 특질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플라톤이 강조한 교육에서도 남성 중심의 덕목과 가치를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왕소정, 2008). 전통적으로 남성성은 폭력과 공격, 경쟁, 성취, 결단, 독단 등이고, 여성성은 보살핌, 유연성, 상호보완성, 대화, 협력 등을 의미한다. 남성은 일의 성취와 관련되었고 여성은 모성과 관련되어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결과이지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늘날에 와서 소위 알파걸이라고 불리는 성취성향이 강한 여자들의 대규모 등장이 이를 반증한다.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선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평등과 같아짐은 다른 의미이다. 상대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똑같게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도 같게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차이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가능한 조건을 마련 받을 권리, 차이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질 때에라야 평등하다. 그런데 형식적 평등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여성이 그 평등의 수혜를 받지 못할 때, 소외는 더 내면화되고 차별은 더 강화된다.

여성에게 옛날부터 누적적으로 부과한 억압은 남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에 대한 위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세상 절반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전제가 숨어있다. 기회를 주는 사람의 호혜에 의해서, 또 다른 그 누구의 희생을 업고라도, 그리고 여성이 남성처럼 출산과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라야 또한 가사노동에 허덕이지 않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공익 광고는 여자의 노동의 의무—남성과 똑같은—만 강조했지 여성의 노동의 권리는 말하지 않았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주류인 남성적 시각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국가와 가족관계 속에서의 여성

플라톤 국가의 정의(justice)는 공동체적인 덕의 실현에 있다. 이는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공동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는 계급에 따라 가능한 덕이 있어 그들의 조화가 가장 아름다운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지배계급의 경제적인 사리사욕 추구와 사유재산제도에 바탕을 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고 사유재산을 축적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이라도 국가의 공익만을 추구하도록 이들에 대해서 사유재산제도와 가족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육아와 공동체 생활은 여성을 묶어왔던 육아와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기를 실현하는데 좋은 사회적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이 『국가』에서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가 구체적 실현을 마련하는 『법률』 편에서는 다르게 그려진다. 플라톤의 가장 후기 작품으로 간주되는 『법률』은 그가 그린 '훌륭한 나라' , '아름다운 나라' 를 세우기 위해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신부와 신랑은 가장 훌륭한 아이들을 낳아서 나라에 보여 주겠다고 마음먹어야만(법률 783e) 할 정도로 결혼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재생산을 통한 국가의 유지에 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교육에 있어서도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은 소녀들은 옷을 벗은 상태로 (…) 스타디온의 코스에서 시합을 하게 하나 13세에서 혼인 때까지의 여자들은 (혼인연령16-20세) 18세 까지는 잔치에 참여하되 20세 이상은 그러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절한 의상을 걸치고서 이 코스들의 경주에 등장해야 한다(법률 833d)고 함은 남여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유산 상속 있어서는 '남자들 쪽이 앞서는 반면, 여자들 쪽은 한 세대 뒤쳐진다' (법률 922a-928d)고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권리는 이미 제도에서부터 불평등구조를 가진다.

선언적이지만 여성의 평등을 언급한 플라톤의 국가는 오늘날의 국가보다 적어도 제도적으로 여성의 자기실현을 위한 좋은 조건을 구현했다. 자본제의 발달은 여성의 재생산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게 되었다. 게다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의 재생산을 경시한 결과,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가족의 붕괴와 이탈은 그간 가족이 담당해 왔던 기능까지 국가가 수행해야 하며 국가 대 가족이 아니라 국가 대 개인으로 그 접촉면이 넓어졌다. 국가가 상대해야 할 표면적의 증가는 국가의 또 다른 부담이다. 그래서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다. 보육비 지원이나 무상교육, 무상 급식, 출산비·의료지원 등등이 그것인데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하다. 제도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에게 환영 받을만한 일이나 그와 함께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차별이 해소되어야만 가족이 재탄생될 수 있다.

V. 결 론

여성의 심리나 정체성은 남성/여성이라는 사회가 만든 이분법적 범주, 권력,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 이해에 성과 권력을 중심에 두며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문제를 일으킨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Corey, 2012).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상담의 시각은 여성의 억압을 없애고 사회적 여성의 시선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며 성의 형식적 평등 즉, 남성과 여성의 같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상담은 사회문화적으로 당연시되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어떤 여성/소수자에게 폭력이 된다면 그 여성/소수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그 경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즉, 그 사회에서 당연시되지만 여성/소수자인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변화시켜야 할 조건임을 공감하며 내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의 핵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차별이 여성주의 상담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보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같음' 과 '차이' 그리고 '차별' 에 대해 여성주의 상담의 고유기법인 권력분석과 성역할 분석으로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로서 광고 문구를 시작으로 『국가』와 『법률』에 나타난 플라톤의 여성관을 살펴본 바, 여성 차별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플라톤의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각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대체 시켜 이분법적

으로 남·여를 갈라놓음으로써 차별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대체시켜 남·여를 대립적으로 위치 지워놓고 거기에 가치가 투영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남성은 우월하게 여성은 열등하게 만들었다. 셋째, 플라톤이 『국가』와 『법률』에서 보여주는 남녀 평등적 교육관은 그 둘의 차이를 사상한 형식적 남녀평등이지 차이를 존중하는 내용적인 남·여 평등이 아니어서 오히려 여성을 소외시켜 차별을 내면화 하는데 일조하였다. 소위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불리는 특성은 문화적 맥락 개입이 커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구성된 개념만으로 여성의 본래성, 남성의 본래성을 도출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엄연히 다르다. 다름을 근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일 것이다(왕소정, 2008). 생물학적 차이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남성, 같은 여성 사이에도 수없는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개인적인 능력과 선호의 차이를 차별적 뉘앙스로 치환시킨다. 같지 않아서 다소 낯설고 불편한 것, 바꿔 말하면 차이가 있어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은, 낯선 타자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겸손함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은 삶의 겸손함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체험되고 교육되어야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여성주의 상담의 고유기법인 권력분석과 성역할 분석으로 상담실제에서 내담자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이은아, 2016). 성공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선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등하다는 인식의 전환은 내담자의 권력을 강화한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문제를 가진다는 것은 상담 전에 자신을 위해 사용할 권력이 적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상담은 내담자의 권력을 악화시키지 않고 강화시키는 성과를 가져야만 여성주의 상담이 추구하는 평등의 방향으로 내담자를 도운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같음', '차이', '차별'의 개념들과 얽힌 문제들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다뤄져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와의 연관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화가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적 논의는 내담자의 현재 내적조건들(욕망, 감각, 감정, 생각, 직관 등)을 자각하게 도운 후 이 중 과거 외적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조건화/내면화시킨 것 가운데 현재 삶에 방해가 되는 내적조건들을 자각하게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내담자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노성숙. 2009. "철학상담과 여성주의 상담", **여성학논집**, 26(1), 3-39.

김은아. 2016. "윌버의 통합적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1(3), 365-393.

김예숙. 2011.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6(2), 197-218.

김혜경. 2005.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 역사, 실제, 방법론**. 한울.

이상인. 1999. "플라톤의 국가철학", **철학연구**, 45, 65-191.

왕소정. 2008.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여성교육", **교육연구논총**, 29(2), 125-139.

플라톤. 2005. **국가**, 박종현 역주. 서광사.

_____. 2009. **법률**, 박종현 역주. 서광사.

Corey, G. 2012.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외 공역. 센게이지러닝코리아.

Lovibond, Sabina. 2000. *The Cambridge Companion to Feminism in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slanger, Sally. 2000. *Feminism in Meta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rell, J. and Remer, P.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민예숙 · 강김문순 공역. 한.

[토론문]

여성주의 상담의 핵심가치 검토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논문의 의의

이 논문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차이·같음·차별' 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철학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발표문에 따르면,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feminism)에 입각하여 여성 및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강화하는 상담방식이라고 한다. 특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여성 및 소수자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에 의해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당한 이들을 재조명·수용하고 존중하여 평등이라는 가치를 제고하는 게 여성주의 상담의 주요 골자라고 한다.

이는 결국 여성주의 상담이 인권을 신장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 과 '공존' 이라는 가치와 그 맥이 닿아있다고 본다. 이 같은 사실은, 고도로 분화되고 분절화된 개인들의 집합체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상담의 함의와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는 이 논문은 학술적·실천적으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보인다.

❑ 논문의 한계와 보완점

그렇지만 이 논문은 학술적으로 많은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로선 논문의 구성 및 체계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논문은 “여성 철인왕의 가능성을 타진한 플라톤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살펴보고 차별의 이유를 광고문구와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논문의 저자가 밝히는 논문의 목적부터가 불분명하고 불명확해 보인다. 저자가 본문에서 밝힌 논문의 목적 자체도 핵심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본문 어디에도 여성주의 상담에서 플라톤의 여성주의적 시각이 갖는 중요성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별의 이유를 광고문구와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서 탐색한다” 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는데, 한낱 분석 대상인 광고문구에서 차별의 이유를 탐색한다는 저자의 언술이 토론자로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논문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목차를 보면, 저자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II에서 전통적 상담과 여성주의 상담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주의 상담의 강점을 부각시킨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그 후에 이어지는 III과 IV는 왜 해당 내용이 들어갔는지 의아함을 거둘 수 없다. 예를 들어 ‘III.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공익광고’ 에서는 여성주의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공익광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논문 전체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IV. 여성주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여성관’ 의 경우, 저자의 의도가 플라톤의 여성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여성주의 상담에서 플라톤의 여성관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있는지 잘 파악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논문제목과 목차 구성의 일관성 내지 일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논문제목에선 분명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같음·차이·차별이 갖는 철학적 의미’ 를 분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은 물론 목차구성 어디에도 같음·차이·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토론자는 저자의 핵심 주장이 “철학적 분석을 통한 비판적 논의는 여성의 차이를 차별로 이르게 하는 고리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고 쓴 문장에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문장에 충실하게 논문의 제목과 목차를 재구성·재배열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야 논문의 학술적 완성도는 물론 저자의 핵심 주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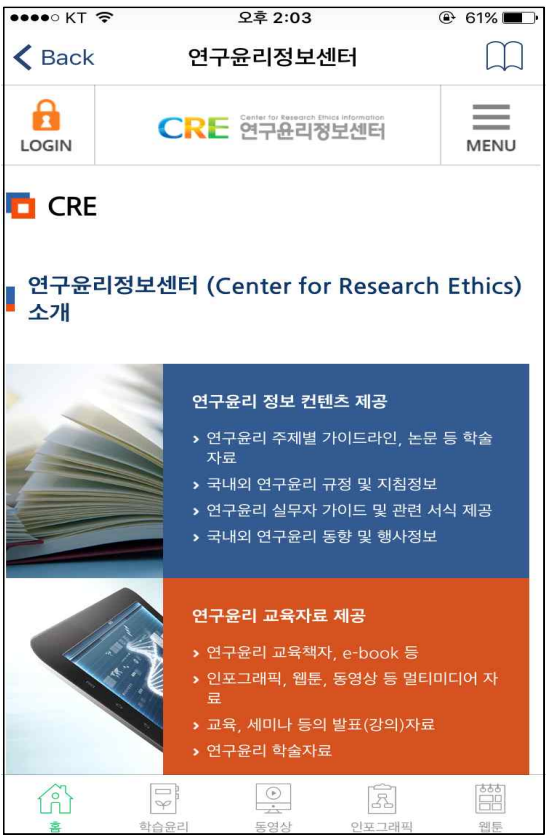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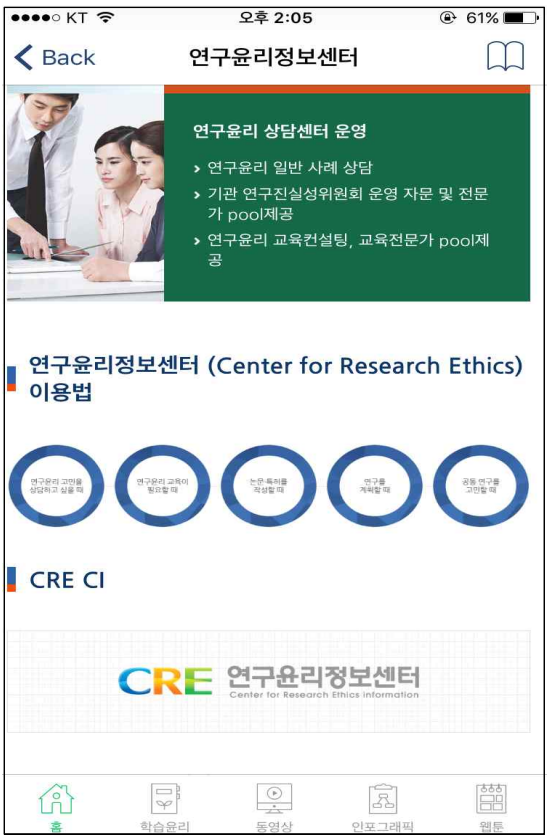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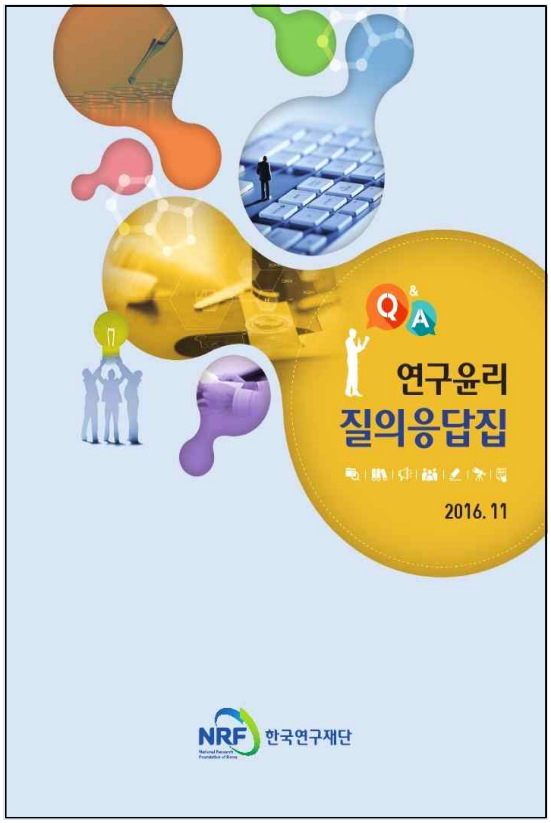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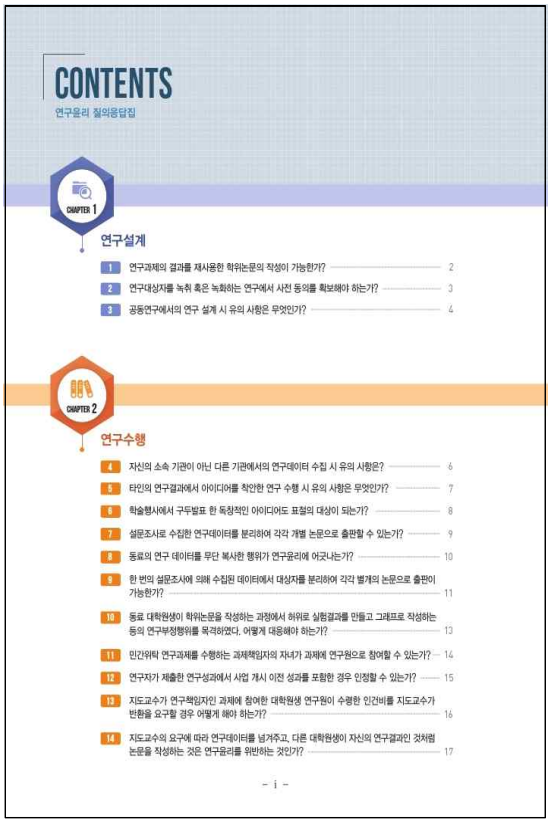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2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획보해야 하는가? 3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

CHAPTER 2

연구수행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6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7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8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9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10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11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14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15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17

- i -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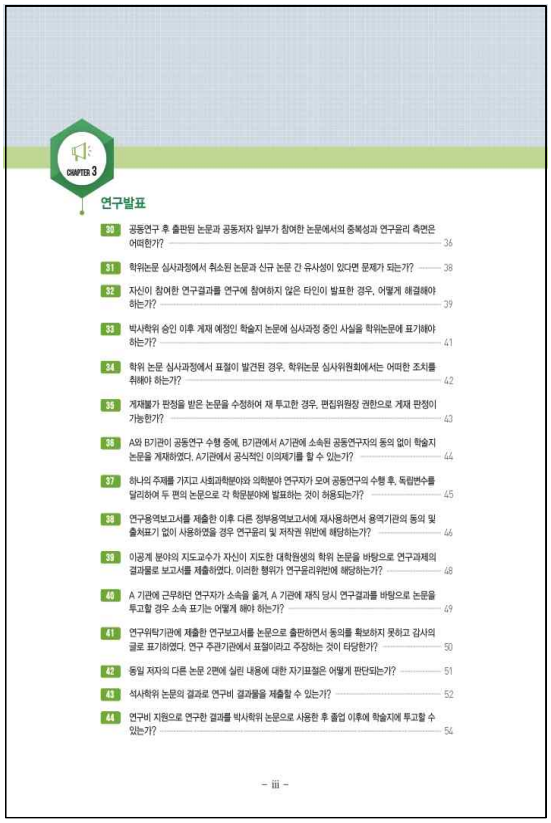

CHAPTER 3

연구발표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6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8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9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1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2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3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44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5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46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48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50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1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52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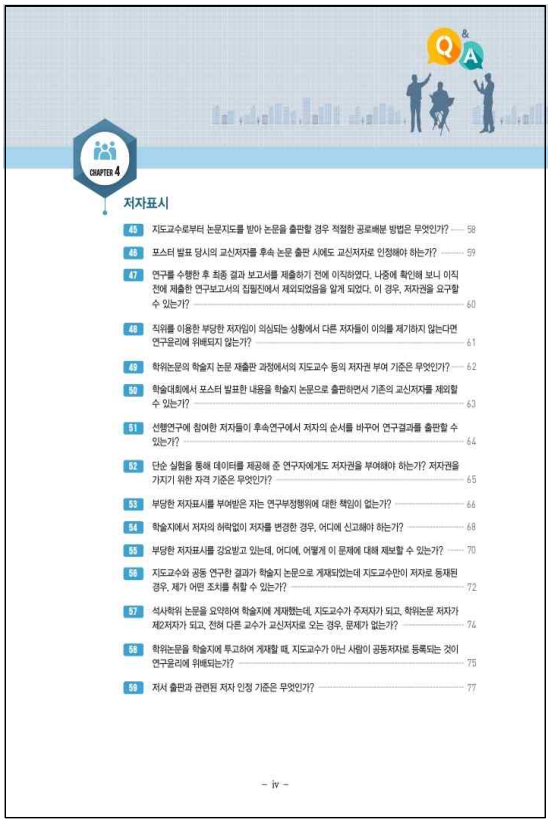

CHAPTER 4

저자표시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58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59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60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61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제출만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62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64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65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66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68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70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72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74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75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77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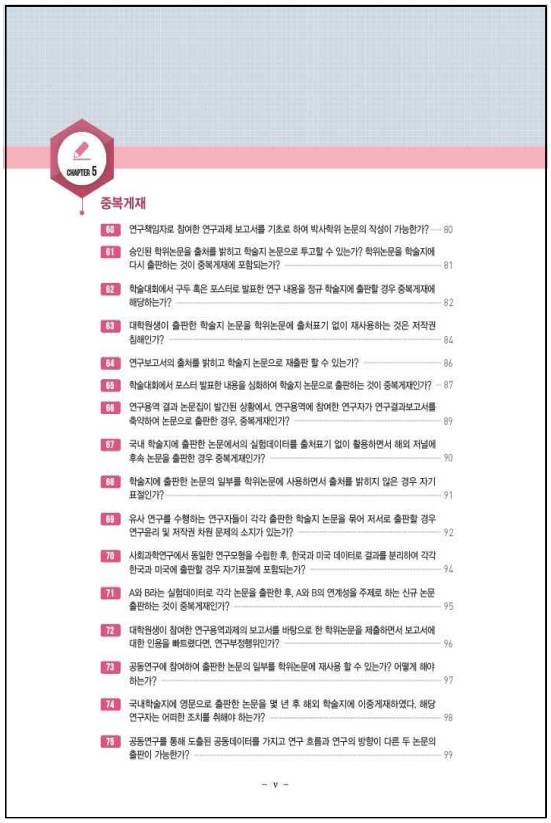

CHAPTER 5

중복게재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80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81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82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84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 86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87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89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90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 91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 92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 94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95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 96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7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98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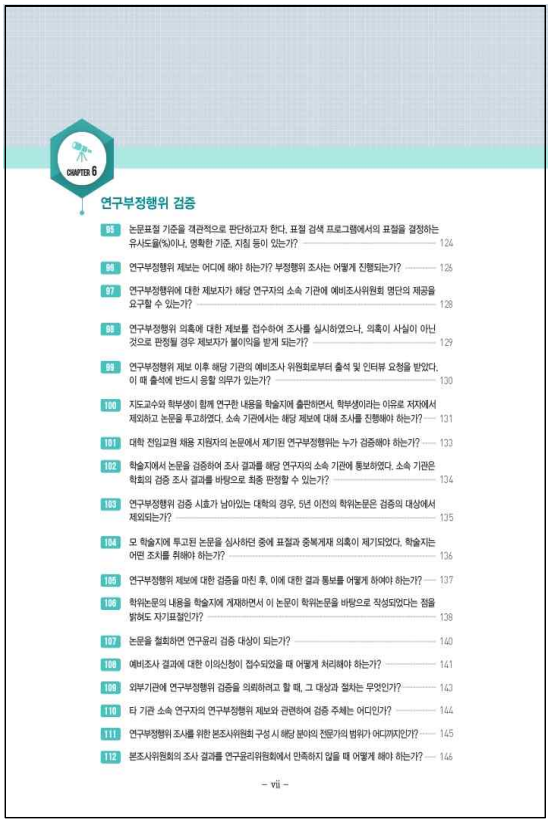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 124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126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28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129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 130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 131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 133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 134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135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36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137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 138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 140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41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 143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 144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145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46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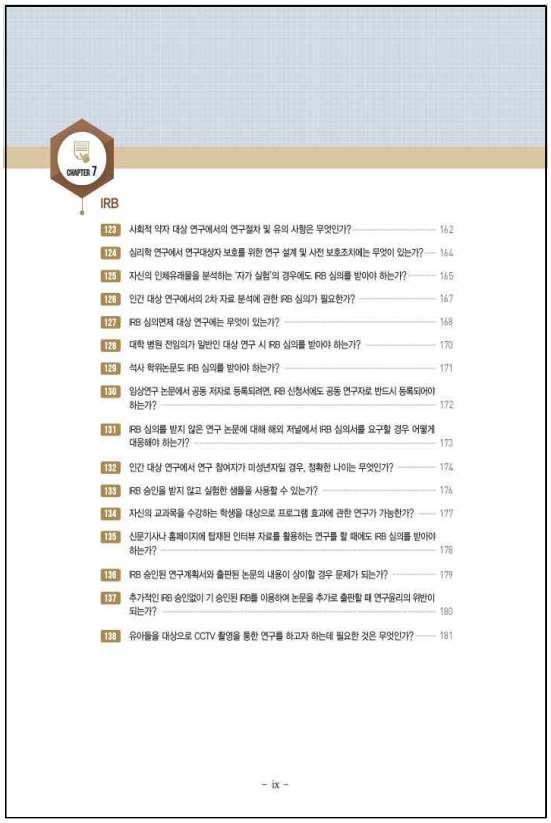

CHAPTER 7

IRB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68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176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77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

– ix –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년 가을 학술대회(2017.1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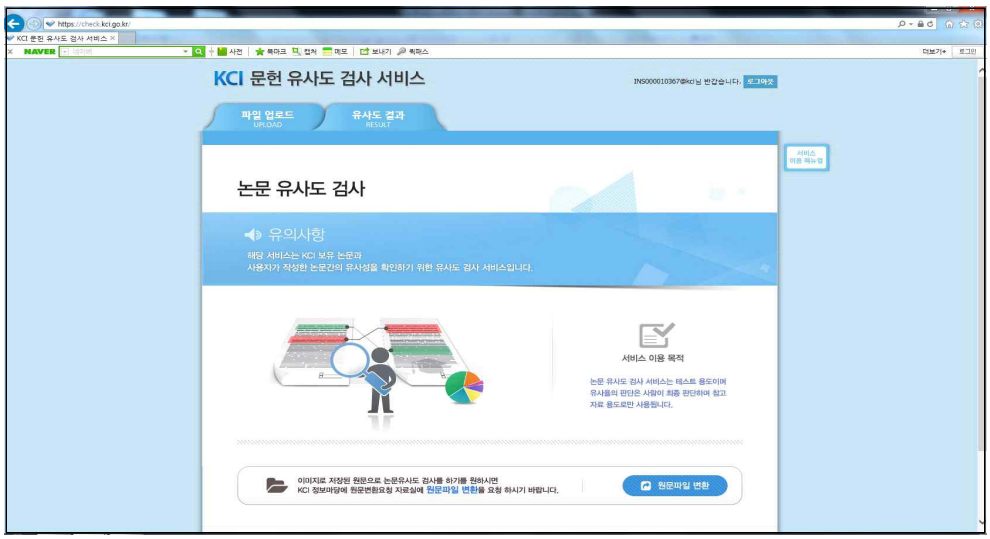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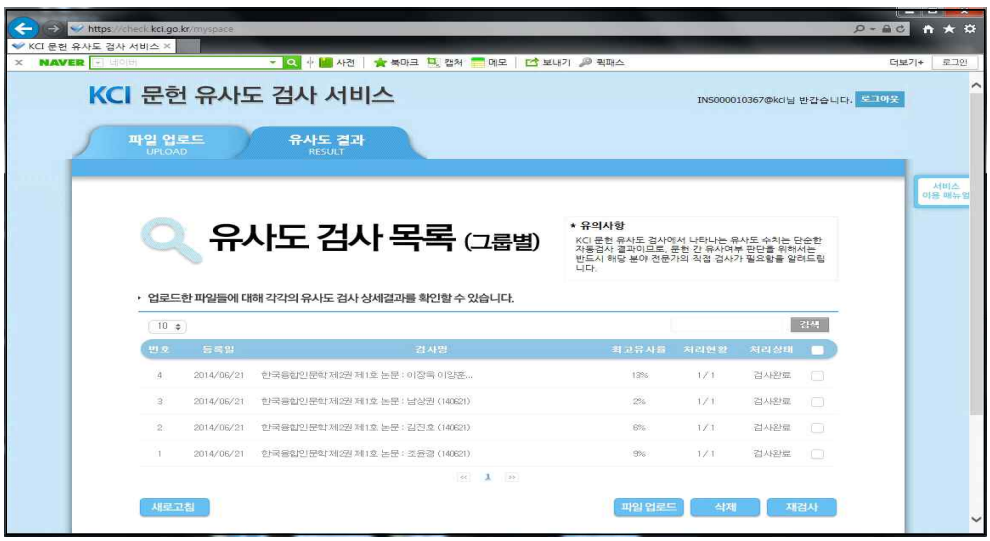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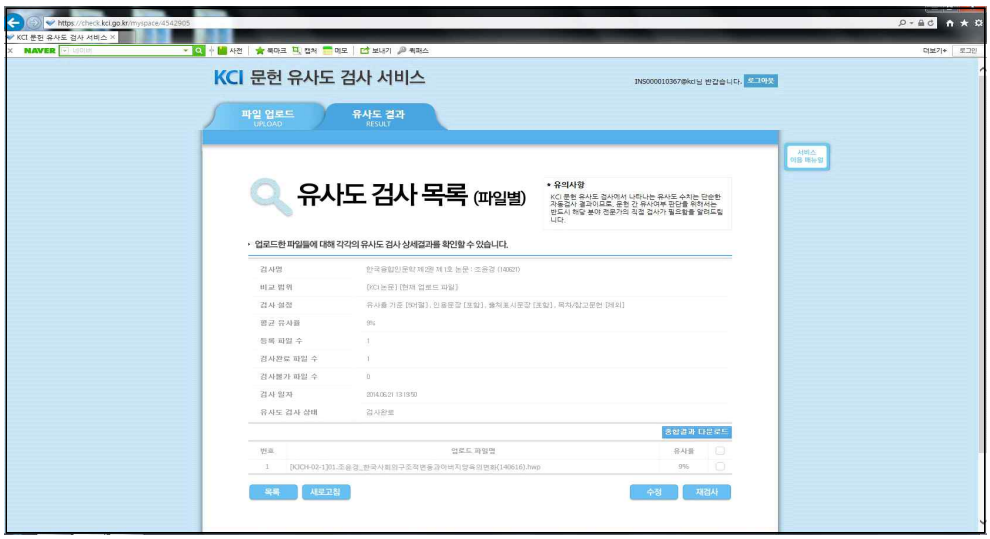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